

##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

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·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감시대상	집합투자업자명	DB자산운용(주)		
	집합투자기구명	DB다같이법인MMF제1호, 동 Class C, W		
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·행위의 법령등 위반내용		- 제한내용 : 집합투자재산 가중평균잔존만기 제한(75일 이내) (법 제229조제5호 / 시행령 제241조제2항제3호 / 감독규정 제7-14조, 제7-15조제3항 및 제4항) - 위반내역 : 아래 집합투자재산 가중평균잔존만기가 카타르 관련 자산 외 정상자산에 대한 환매로 인하여 기준년도 75일을 초과함		
		기준년도	결과값	정상여부
		75일 이내	110.7일	위반
신탁업자 조치사항	철회요구사항			
	변경요구사항			
	시정요구사항	집합투자재산 가중평균잔존만기 제한 (75일 이내)을 준수토록 요구함		
요구일자 및 이행일자	신탁업자 요구일자	2018. 9. 4.		
	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<sup>1)</sup>	2018. 9. 7. 현재 미이행		
기타 사항 <sup>2)</sup>				

주 1) 이행한 경우 이행일자를,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년 월 일 현재 미이행으로 기재

2)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

2018년 9월 11일

신탁업자 :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(인)

담당자 : 차장 오주만 (☎3770-8649)

